2-47 알로에 겔

1) 제조기준

(1) 원재료 : 알로에 베라(*Aloe vera*)의 잎

(2) 제조방법

(가) 상기 (1) 원재료의 외피를 제거한 후 겔 부분을 분리하여 건조·분말화하여 제조하여야 함

(나) 상기 (1) 원재료의 겔 부분만이 분리되도록 분쇄·여과, 착즙 또는 농축하여 제조하여야 함

(3) 기능성분(또는 지표성분)의 함량 : 고형분 중에서 총 다당체를 30 mg/g 이상 함유하고 있어야 함

2) 규격

(1) 성상 :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 · 이취가 없어야 함

(2) 총 다당체(기타원료에서 유래하는 다당체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함)

(가) 원료성 제품 : 표시량 이상

(나) 최종제품 : 표시량의 80% 이상

(3) 안트라퀴논계화합물(무수바바로인으로서)(%) : 0.005 이하(알로에 겔 100% 기준, 원료의 농축배수 및 알로에 겔 환산 함량에 따라 환산 적용함)

고시 제2023-91호(2023.12.27.), 시행일(2025.1.1.)
(3) 알로인 A와 B의 합으로서(mg/kg) : 10 이하(알로에 겔 100% 기준, 원료의 농축배수 및 알로에 겔 환산 함량에 따라 환산 적용함)

(4) 대장균군 : 음성

3) 최종제품의 요건

(1) 기능성 내용 : 피부건강 · 장 건강 ·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

(2) 일일섭취량 : 총다당체 함량으로서 100 ~ 420 mg

고시 제2023-91호(2023.12.27.), 시행일(2025.1.1.)
(2) 일일섭취량 : 총다당체 함량으로서 110~420 mg (3) 섭취 시 주의사항 :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

4) 시험법

(1) 성상 : 제 4. 2-7 성상시험법

(2) 총 다당체 : 제 4. 3-27 총 다당체

(3) 안트라퀴논계화합물(무수바바로인으로서)

: 제 4. 3-47 안트라퀴논계화합물(무수바바로인으로서)

고시 제2023-91호(2023.12.27.), 시행일(2025.1.1.)
(3) 알로인 A와 B의 합 : 제4.3-81 알로인

(4) 대장균군 : [별표 4] 참조